

[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81호]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를 2차례 이상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9.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

1. 건 명 :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 참조)
4. 공고기간 : 2026. 9. 9. ~ 2026. 9. 23. 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(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051-719-4504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박보경(Tel. 051-860-20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9. 9. ~ 2026. 9. 23.)

연번	성함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원*연	78.10.30	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(이하생략)	처분사전통지서	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○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- 2025. 7. 22.~ 2025. 12. 1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025. 7. 22.부터 2025. 12. 1.까지 프리랜서로 여행업을 하였고, 2025. 12. 2., 12. 4.~12. 9., 12. 11. 12. 12.(9일)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2025. 8. 18., 2025. 9. 15., 2025. 10. 16, 2025. 11. 10., 2025. 12. 12. 부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하여 129일분 총 8,280,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됨 ○ 총 반환명령액: 14,892,510원 - 부정수급액: 8,280,750원 - 중지일 이후 반환액: 128,380원 - 추가징수액: 6,483,380원 ○ 지급제한일: 2025. 9. 15.	폐문부재